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23

발의연월일: 2022. 2. 10.

발 의 자: 김주영·고용진·김수흥

박 정・어기구・오영환

위성곤 • 윤재갑 • 윤후덕

이병훈 · 이원욱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경력 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 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 되어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 시기를 늦추 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 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 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2월 31일----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 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

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 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 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 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 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 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025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